

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

의안 번호	20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11.19

제 출 자 : 사 하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.
- 2010년도 지방세,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, 국·시비 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, 물건비, 자본지출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일반회계 ----- 210,064백만원

○ 세 입

(단위 : 백만원)

계	지방세	세외수입	지방교부세	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	보조금
210,064	22,541	16,976	5,500	27,986	137,061

○ 세 출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물건비	경상이전	자본지출	보전재원	예비비등
210,064	30,472	12,962	144,477	18,303	165	3,685

나. 특별회계 ----- 8,648백만원

-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93
-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,545
- 주차장 특별회계 4,976
-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149
-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540
- 기반시설 특별회계 480
-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61
- 재정비축진 특별회계 4